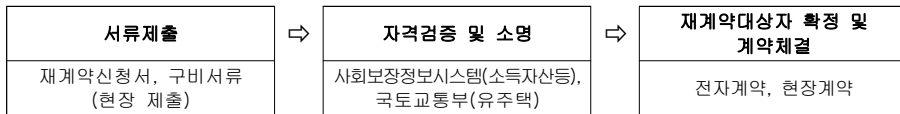


아미 행복주택 재계약 서류제출 안내문

- ❗ 서류제출은 재계약이 아니고 재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본 안내문에 따라 **재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자격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전자계약, 현장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여야 합니다.**

절차안내



1 재계약 자격요건

- ❗ **계약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자세한 사항은 ‘7p. 붙임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계약자	
• 계약자의 배우자	계약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계약자의 직계비속 및 계약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전혼 자녀) •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외국인 등록을 하고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 자격검증 시점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 시스템 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따라서 조회된 날 이후에는 대상물건을 매각하여도 자산 등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 변경도 미반영 됩니다.)

❗ 재계약 기준

○ 신분별 재계약 기준

구 분	신분	자격 기준	기준 초과 시
주택	대학생	무주택자	재계약 거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수급자		
소득	대학생	(본인+부모) 100%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청년	(세대) 10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 100% (맞벌이 120%)	
	고령자	(세대) 100%	재계약 거절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자산	총자산	대학생	재계약 거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수급자	
	자동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수급자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10년	최대거주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절 ※ 단, 다른 신분자격을 갖출 경우 변경하여 계속 거주 가능하며, 각각의 최대거주기간은 초과할 수 없음
	청년	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고령자	20년	
	수급자	20년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계약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기준별 재계약 기준 상세**

구 분	산정방법
주 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 ※ 7p ‘붙임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소 득	[소득금액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신청자격별 기준금액은 11p~ ‘붙임2 행복주택 소득·자산 선정방법’ 참조
총자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신청자격별 기준금액은 11p~ ‘붙임2 행복주택 소득·자산 선정방법’ 참조
자동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산정 • 여러 대인 경우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 •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지분 합계액으로 산정 ※ 신청자격별 기준금액은 11p~ ‘붙임2 행복주택 소득·자산 선정방법’ 참조

※ 상기 기준금액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계층전환을 신청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1 **자산 및 주택 기준 초과 시 퇴거**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시 퇴거대상이 됩니다.

2 **재계약 유의사항**

1 (세대원 주택소유 및 자녀취업 등) 세대원 중 타지역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시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소득 자산 등이 합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적격 소명) 주택소유 및 재계약 기준(소득/총자산/자동차)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안내하는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 미체결자 처리) 갱신서류 미제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월임대료·관리비 미납 등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 자진퇴거 하여야 하며 미퇴거시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부당이득금이 부과됩니다.

3 **재계약 신청 및 구비서류[현장접수]**

1 신청기간 : '26. 6. 18.(목) ~ 6. 20.(토) (10:00~16:00) * 점심시간(12시~13시) 신청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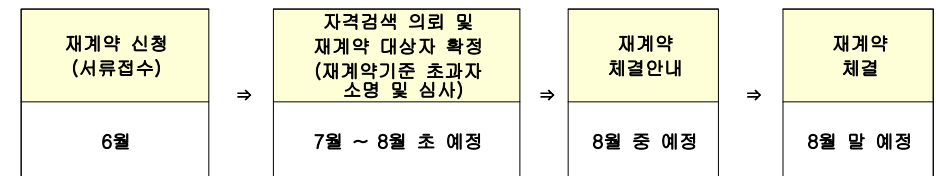
6. 18.(목)	6. 19.(금)	6. 20.(토)
101동 103동	102동 104동	모든 동 접수 ★ 주말은 장시간 대기 및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동별 지정된 요일 방문과 평일 접수 권장

1 신청장소 : **아미행복주택 104동 B5층 다목적회의실**

※ 접수기간동안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특히 주말 및 점심 전후)에 접수 인원이 몰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대기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인원이 몰릴 시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접수를 위해 현장안내에 따라 질서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내 서류접수를 하지 않아 자격심사가 늦어질 경우 갱신계약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갱신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재계약체결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계약 체결절차**



* 자격검색 및 소명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재계약 체결일자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㉑ (구비서류) ※ **안내문 시행일(공문 시행일) 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

순번	구비서류	안내사항
① 공통	주민등록등본 (전부표기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대학생 계층 : 부모님의 등본 추가제출 / 단,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②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계약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③ 공통	재계약신청서 (#별지1)	• 계층전환신청(대상자에 한함)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④ 공통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2)	•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함 • 세대구성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점선 안에 정자로 작성바람 -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및 해당 세대원 전원(형제,자매 등 방계 제외)
⑤ 공통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별지3)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이혼 및 사별의 경우 배우자 제외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별지3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없음에 표시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같음하여 제출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⑥ 공통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별지4)	•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함(22p 작성에서 참고) • 세대구성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점선 안에 정자로 작성바람 -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별지4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제외
⑦ 공통	통장 사본	• 반드시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계약자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이 확인되어야 함.
⑧ 해당 세대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 대상자만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 자산기준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태아 또는 입양 포함)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 안내문시행일 이후 발급본
⑨ 해당 세대	채권압류등 확인서 (#별지5) ☞ 해당 대상자만	• 공사에 기 통지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채권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질권설정 등)이 존재하는 자
⑩ 해당 세대	신분 확인용 서류 ☞ 해당 대상자만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주거급여수급자계층) • 주민등록초본(개명하신 분) •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⑪ 공통	서약서 (#별지6)	• 무주택, 중복임주, 전대금지, 시설물설치 및 변형금지 등에 대한 서약
⑫ 공통	신분증 (필수)	• 본인(계약자) 신청시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대리인(배우자) 신청시 : 계약자, 배우자 각각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대리인(배우자외) 신청시 : 계약자, 대리인 각각 신분증, 위임장(#별지 7), 인감증명(계약자 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계약자 인감도장

㉑ 재계약 변경 임대조건(추후 통보)

㉑ (임대조건 변경)

갱신 시 임대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갱신된 금액이 적용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동(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게 됩니다.(추후 통보)

㉑ (소득 초과자 할증)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각각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재계약 체결 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존입주자, 자격완화 입주자 등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입주한 임차인도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소득초과시(1회 초과) 할증 반영비율	2회 이상 소득초과시 할증 반영비율
10%이하	110%	120%
10%초과 30%미만	120%	130%
30%초과	130%	140%

㉑ 기타 사항

㉑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없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㉑ 사업시행자의 허가없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㉑ 재계약 문의는 부산도시공사로 연락바랍니다.

☎ 전 화 : 051-810-9905~9907

붙임1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어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행복주택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증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금융 자산	금융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래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총 자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회복지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청자격별 세부내용

대학생 계층

[소득 검증]

☑ 기준: **“본인 + 부모”**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자산·자동차 검증]

☑ 기준: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출산자녀수에 따른 가산 내용]

☑ 내용: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산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원 이하)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 자동차)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8,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2인	0인	110%	108,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1인	120%	119,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3인 이상	0인	100%	108,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1인	110%	119,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2인 이상	120%	130,000,000원 이하	소유불가

청년 계층

[소득 검증]

☑ 기준: **“해당세대”**

신청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청년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세대 범위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 있는 세대주인 청년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자산·자동차 감정]

☑ 기준: “해당세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출산자녀수에 따른 가산 내용]

☑ 내용: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 자동차)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청년	1인	0인	120%	251,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2인	0인	110%	251,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20%	276,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3인 이상	0인	100%	251,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10%	276,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감정]

☑ 기준: “해당세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세대 범위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자산·자동차 감정]

☑ 기준: “해당세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출산자녀수에 따른 가산 내용]

☑ 내용: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 자동차)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일반	맞벌이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0인	110%	130%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20%	-	380,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3인 이상	0인	100%	120%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10%	130%	380,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2인 이상	120%	140%	414,00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고령자

[소득 검증]

☑ 기준: “해당세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세대 범위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자산·자동차 검증]

☑ 기준: “해당세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출산자녀수에 따른 가산 내용]

☑ 내용: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 자동차)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2인	0인	110%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20%	380,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1인	110%	380,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해당세대 범위: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별지1(공통)

재계약 신청서

임 대 단 지 명		동 / 호	동 호
재 계 약 신 청 자 (택 1 필수)	본 인 ☐	이 름	연 락 처 010-
	대 리 인 ☐ (배우자 외 대리인 → 별지7 작성)	이 름 (계약자의 관계가)	연 락 처
2023. 3.28. 이후 출생 자녀 여부(임양 및 태아 포함)(택 1 필수)			
없음 ☐		있음 ☐	
공급계층(택 1 필수)			
공급계층 유지	☐ 대학생 / ☐ 청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주거급여수급자 / ☐ 고령자		
공급계층 변경 (희망자에 한함)	기존 (최초 신청시)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변경 (금회 신청시)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제출서류 자가 체크리스트] - 서류 구비 완료시 오른쪽 네모칸에 o 표기

제출서류 목록	제출 (√표기)	제출서류 목록	제출 (√표기)
(별지1) 재계약신청서		(공통) 통장사본	
(별지2)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공통) 주민등록등본(전부표기)	
(별지3)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별지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세대) 임신진단서/입양증명서	
(별지5) 채권압류등 확인서		(해당세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별지6) 서약서		(해당세대) 주민등록초본	
(별지7) 위임장		(해당세대) 외국인등록증	

상기 본인은 위 거주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종료로
차기 임대차계약 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2(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통폐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입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재계약관련용역업체, 시공사

나. 제공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2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추가급여 계약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 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입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재계약관련용역업체	서류접수 및 보완, 재계약관련사항,, 민원응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보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강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감응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 .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3(공통)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동포레스트힐 아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 경동포레스트힐 아미	(보증금 전액 기재)	[임차인]	본인
		원		계약자 이름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부채	출자금/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정자글씨 자필서명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예시



주의하셔서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김철수	1 1 1 1 1 1 - 1 1 1 1 1 1 1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호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김철수	1 1 1 1 1 1 - 1 1 1 1 1 1 1	김철수	김철수
배우자	이영희	1 1 1 1 1 1 - 1 1 1 1 1 1 1	이영희	이영희
자녀	김민희	1 1 1 1 1 1 - 1 1 1 1 1 1 1	김민희	김민희
자녀	김영수	1 1 1 1 1 1 - 1 1 1 1 1 1 1	김영수	김영수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오늘날짜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자
본인도
모든 인원
적어주세요
고

적어주세요
다곤데
빠짐없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영의계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해당세대)

채권압류등 확인서

임 대 단 지 명

경동포레스트힐 아미

동 / 호

동 호

1. 본인은 상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갱신계약을 공공주택사업자인 귀 공사에 요청함에 있어서 금번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귀 공사에 기 통지된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채권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 결정상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2.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진퇴거하고 위 임대주택을 귀 공사에 인도하겠으니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임차인 성명 (서명)

H.P. 010

부산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약서(무주택·중복입주·전대금지 등)

임대단지명		동/호	동	호
계약자		연락처		비상연락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계약자	
• 계약자의 배우자	계약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부모, 장인/장모 등)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계약자의 직계비속 및 계약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전혼 자녀)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무주택 서약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재계약 포함)에 있어서 본인(계약자)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자격검증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현재 계약(재계약 포함)시까지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재계약 포함)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재계약 불가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붙임1 참조)

중복입주 서약

본인(계약자)은 임대주택 입주를 함에 있어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는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타 기관 포함)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3에 의한 중복 입주·계약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향후 중복입주에 대한 전산검색(재계약, 명의변경 포함) 결과 중복입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본인(계약자) 및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타 기관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된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본인(계약자)에게 속한 세대에서 분리하여야 재계약 또는 입주(신규 입주 시)가 가능함.

전대금지 서약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조항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물설치 및 변형금지 서약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아파트 세대내 시설 및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무단설치 및 변형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강제철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단, 우리공사 세대 전용부분 파손(고장) 시설물 원상 복구비용 산정 지침에 의거 세대내 환관 보조기, 불박이장 등 별도설치품목을 설치하였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귀하 20 년 월 일 서약자(계약자) : (자필서명)

위임장(해당자만)

□ 주택의 표시 : 행복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재계약 신청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관련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처

수임자(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처

* 붙임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부산도시공사사장 귀하